#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정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590 발의연월일: 2024. 9. 3.

발 의 자:이정문・이기헌・조승래

김용만 • 문진석 • 이학영

채현일 · 문금주 · 박 정

임광현 · 이연희 · 홍기원

김원이 · 김영배 의원

(14인)

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공무원 재해보상법」은 경찰·소방 등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 '순직공무원' 또는 '위험직무순직공무원'으로 구분하고, 「군인사법」은 군인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 '순직 I·Ⅱ형'으로, 상이를 입은 경우 '공상'으로 구분하는 등 직무수행 중사망한 사람에게는 '순직', 상이를 입은 사람에게는 '공상'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.

그런데,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은 군인이나 경찰·소방 또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을 '재해사망군경' 또는 '재해사망공무원'으로, 상이를 입은 경우는 '재해부상군경' 또는 '재해부상공무원'으로 구분하고 있어, 직무관련성이 있음에도 순직이 아닌 사망, 공상이 아닌 부상이란 용어를 사용함에 따라 공헌

에 합당한 명칭을 부여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초래되고 있음.

이에 '재해사망'을 '재해순직'으로, '재해부상'을 '재해공상'으로 용어를 변경함으로써,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하여 합당한 명칭을 부여하고, 관련 법률 간 용어 사용의 통일성을 확보하려는 것임(제2조제1항제1호 등).

##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제1호 중 "재해사망군경"을 "재해순직군경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"재해부상군경"을 "재해공상군경"으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"재해사망공무원"을 "재해순직공무원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"재해부상공무원"을 "재해공상공무원"으로 한다.

제1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"재해사망군경"을 "재해순직군경"으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"재해부상군경"을 "재해공상군경"으로 한다.

#### 1. 재해공상군경

제17조제1항 중 "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"을 "재해공상군경 및 재해공상공무원"으로 한다.

제18조제1항제1호 중 "재해부상군경"을 "재해공상군경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"재해사망군경"을 각각 "재해순직군경"으로 한다.

제19조제1항 중 "재해부상군경"을 "재해공상군경"으로 한다.

제2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2호 및 제4호 중 "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"을 각각 "재해순직군경 및 재해순직

공무원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"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"을 "재해공상군경 및 재해공상공무원"으로 한다.

1. 재해공상군경 및 재해공상공무원

제3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"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"을 "재해순직군경 및 재해순직공무원"으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"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"을 "재해공상 군경 및 재해공상공무원"으로 한다.

1. 재해공상군경 및 재해공상공무원

제43조 중 "재해부상군경, 재해부상공무원"을 "재해공상군경, 재해공상 공무원"으로 한다.

제48조제1항 중 "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"을 "재해공상군경 및 재해공상공무원"으로 한다.

제51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중 "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"을 각각 "재해공상군경 및 재해공상공무원"으로 하고, 같은 조제6항제1호 중 "재해사망군경"을 "재해순직군경"으로 하며, 같은 항제2호 중 "재해부상군경"을 "재해공상군경"으로 한다.

제52조 중 "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"을 "재해공상군경 및 재해공상공무원"으로 한다.

제53조제1항 중 "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"을 "재해공상군경 및 재해공상공무원"으로 한다.

제5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"재해사망군경 및

재해사망공무원"을 "재해순직군경 및 재해순직공무원"으로 한다.

1. 재해공상군경 및 재해공상공무원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 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의3제1항제2호 중 "재해부상군경"을 "재해공상군경"으로 한다.

②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9조제1항제2호 중 "재해사망공무원"을 "재해순직공무원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"재해사망군경"을 "재해순직군경"으로 하며, 같은 항 제4호 중 "재해사망공무원"을 "재해순직공무원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"재해사망군경"을 "재해순직군경"으로 한다.

③ 國家保安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 중 "재해부상군경 또는 재해사망군경"을 "재해공상군경 또는 재해순직군경"으로 한다.

④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의6제1항제1호 중 "재해부상군경"을 "재해공상군경"으로 하고,

같은 항 제2호 중 "재해부상공무원"을 "재해공상공무원"으로 한다.

⑤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 중 "재해사망군경"을 "재해순직군경"으로 한다.

⑥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5조제3항 중 "재해사망군경"을 "재해순직군경"으로, "재해부상군 경"을 "재해공상군경"으로 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적용 대상 보훈보상대상자)	제2조(적용 대상 보훈보상대상자)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	①
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, 그	
유족 또는 가족(다른 법률에서	
이 법에 규정된 지원 등을 받	
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)	
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	
다.	<b>–</b> .
1. <u>재해사망군경</u> : 군인이나 경	1. <u>재해순직군경</u>
찰·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	
의 수호·안전보장 또는 국민	
의 생명·재산 보호와 직접적	
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	
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	
(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	
함한다)	
2. <u>재해부상군경</u> : 군인이나 경	2. <u>재해공상군경</u>
찰·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	
의 수호·안전보장 또는 국민	
의 생명·재산 보호와 직접적	
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	
나 교육훈련 중 상이(질병을	
포함한다)를 입고 전역(퇴역·	

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 해제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하거나 퇴직(면직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(이하 "상이등급"이라한다) 으로 판정된 사람

- 3. 재해사망공무원: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조 및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조에 따른 공무원(군인과 경찰·소방 공무원은제외한다)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생명·재산 보호와 직접적인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(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)
- 4. <u>재해부상공무원</u>: 「국가공무 원법」 제2조 및 「지방공무

3.	재해순직공무원
	-
4.	재해공상공무원

원법」 제2조에 따른 공무원 (군인과 경찰·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)과 국가나 지방자 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 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·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(질병을 포 함한다)를 입고 퇴직하거나 6개월 이내에 퇴직하는 사람 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 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 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 된 사람

### ② · ③ (생 략)

- 제11조(보상금)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한다. 다만,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보상금 지급대 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  - <u>1. 재해부상군경</u>
  - 2. <u>재해사망군경</u>의 유족 중 선 순위자 1명
  - 3. 재해부상군경 중 대통령령으

_
②・③ (현행과 같음)
제11조(보상금) ①
<u>1. 재해공상군경</u>
2. <u>재해순직군경</u>
3. <u>재해공상군경</u>

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② ~ ⑤ (생 략)

제17조(간호수당) ① <u>재해부상군</u> <u>경 및 재해부상공무원</u>으로서 상이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 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간호수당을 지급한 다.

#### ② (생략)

- 제18조(부양가족수당)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에 따라 부양가족 수당을 지급한다.
  - 1. <u>재해부상군경</u>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
  - 2. <u>재해사망군경</u>의 배우자 및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 망한 경우 그 배우자
  - 3. <u>재해사망군경</u>의 자녀와 제1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 한 경우 그 자녀. 다만, 보상 금을 받는 자녀에 한정한다.

② ~ ⑤ (현행과 같음)         제17조(간호수당) ① 재해공상군         경 및 재해공상공무원
, 1 -1 =1 7 xl. 7 74
1. 재해공상군경            2. 재해순직군경
 3. <u>재해순직군경</u> 

#### ② ~ ④ (생 략)

제19조(중상이부가수당) ① <u>재해</u> <u>부상군경</u> 중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 된 사람에게는 중상이부가수당 을 지급한다.

#### ② (생략)

- 제25조(교육지원 대상자 등) ①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 (이하 "교육지원 대상자"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- 1.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
  - 2. <u>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</u> 무워의 배우자
  - 3. (생략)
  - 4. <u>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</u><u>무원</u>의 자녀, 미성년 제매
  - ② (생략)
  - ③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교육지원 대상자로서 <u>재해부상군</u> 경및 재해부상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미만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제19조(중상이부가수당) ① <u>재해</u>
<u> 공상군경</u>
② (현행과 같음)
제25조(교육지원 대상자 등) ① -
1. 재해공상군경 및 재해공상공
<u> 무원</u>
2. <u>재해순직군경 및 재해순직공</u>
<u>무원</u>
3. (현행과 같음)
4. 재해순직군경 및 재해순직공
<u> 무원</u>
② (현행과 같음)
③
<u>재해공상군</u>
경 및 재해공상공무원

교육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. ----

#### ④ (생략)

- 제33조(취업지원 대상자 등) ①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 (이하 "취업지원 대상자"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- 1.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

     무원
  - 2. <u>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</u> 무원의 배우자
  - 3. <u>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</u>무원의 배우자

#### ② (생략)

- 제43조(신체검사의 합격기준) 취 업지원 대상자인 <u>재해부상군경</u>, <u>재해부상공무원의</u> 신체검사의 합격기준은 그가 채용될 직종 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도로 하며, 그 합격판정은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서 한다.
- 제48조(직업훈련) ① 국가보훈부 장관은 <u>재해부상군경 및 재해</u> <u>부상공무원</u>이 취업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

· ④ (현행과 같음)
제33조(취업지원 대상자 등) ① -
1. 재해공상군경 및 재해공상공
<u>무원</u>
2. <u>재해순직군경 및 재해순직공</u>
무원
3. <u>재해공상군경 및 재해공상공</u>
무원
② (현행과 같음)
제43조(신체검사의 합격기준)
<u>재해공상군경,</u>
<u>재해공상공무원</u>
,
제48조(직업훈련) ①
<u>재해공상군경 및 재해공상</u>
공무원

업재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. ②·③ (생 략)

제51조(진료) ①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이 그 상이처에 대한 진료를 필요로 하거나 질병(부상을 포함한다. 이하 이조에서 같다)에 걸린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의료시설[「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」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(이하 "보훈병원"이라 한다)을 포함한다] 또는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진료한다.다만,본인의 고의에의하여 생긴 질병의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②・③ (생 략)
- ④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상이등급 미만으로 판정된 사람이 그 상이처 외에 질병에 걸려 제1항에 따른 의료시설 및 제2항에 따라 진료를 위탁 받은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 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 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

②・③ (현행과 같음)
제51조(진료) ① <u>재해공상군경 및</u>
재해공상공무원
②・③ (현행과 같음)
④ 재해공상군경 및 재해공상
<u> 공무원</u>

따라 그 진료 비용의 일부를 본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. ⑤ (생 략)

- ⑥ 75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훈병원 외에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.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, 그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.
- 1. 제11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보상금을 받는 <u>재해사망</u>군경의 배우자
- 2. 제11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어 보상금을 받는 사망한 <u>재</u> 해부상군경의 배우자

# ⑦ (생 략)

제52조(보철구의 지급) <u>재해부상</u> <u>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</u>으로서 신체장애로 보철구(補綴具)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철구를

6
1
1
<u>재해순직군</u>
<u>경</u> 2
<u> </u>
세52조(보철구의 지급) <u>재해공상</u>
<u> </u>

지급한다.

제53조(의학적 재활 등) ① 국가 보훈부장관은 <u>재해부상군경 및</u> <u>재해부상공무원</u>의 신체기능 퇴 화를 방지하고 그 기능을 회복 하게 하기 위하여 의학적 재활 과 재활체육에 관한 시책을 마 련하고 그 사업을 수행한다.

#### ② (생략)

- 제56조(대부 대상자) 대부 대상자 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 - 1.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
  - 2. <u>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</u><u>무원</u>의 배우자
  - 3. (생략)

제53조(의학적 재활 등) ①
재해공상군경 및 재
해공상공무원
② (현행과 같음)
제56조(대부 대상자)
1. 재해공상군경 및 재해공상공
<u> 무원</u>
2. 재해순직군경 및 재해순직공
무위

3. (현행과 같음)